##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연철흠 의원 등 6인

###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O 제출일자 : 2018년 3월 14일

O 회부일자 : 2018년 3월 15일

####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및 개별 법령 수수료 개정사 항을 반영하고,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한 사무 수수료 와 법령에 동일한 규정이 있어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4. 주요내용

- O 수수료 근거 상위법령 일부 개정 사항 반영(안 제5조, 안 별표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 범위) 조문 삭제 반영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보수업 → 승강기

유지관리업)

- O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 삭제(안 별표1)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 사항 반영
- O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삭제(안 별표1)
  - 의료법 제80조의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주체가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어 해당 수수료 삭제
- O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수수료 삭제(안 별표1)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서 시군 위임사무로 규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수수료 징수 근거 없음
- O 공유 수면 면허 수수료 산정기준표 삭제(별표1)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수수료 산정기준) 준용

####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및 개별 법령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한 사무 수수료와 법령에 동일한 규정이 있어사실상 불필요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O 주요내용으로는

- 수수료 근거 상위법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과(안 제5조, 안 별표1),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안 별표1)
- 의료법 제80조의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주체가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어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삭제(안 별표1)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군 위임사무로 규정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수수료 삭제(안 별표1),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수수료 산정기준) 준용하고자 공유수면 면허 수수료 산정기준표를 삭제(별표1)하고자 하는 것임
- 이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그리고 시·군과 사무의 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경이 없음.

붙 임: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